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4개 분야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②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20호·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④ 국제협력관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정책실장·노동시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을 “고용정책실장”으로, “보한다”를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시장정책관·고용서비스정책관·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직제 제10호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직제 제10호제3항제9호부터 제17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고용지원정책정책관은 직제 제10호제3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통합고용정책국장 및 청년고용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장”으로, “보한다”를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년고용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청년고용정책관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1항 중 “노동정책실장·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을 “노동정책실장”으로, “보한다”를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공공노사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노사협력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공공노사정책관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8항(종전의 제5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23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단서부터 제5항 단서까지 중 “5퍼센트”를 각각 “7

퍼센트”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u>기획 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 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u>기획 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 로 한다.</u>
② <u>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u>	② <u>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 관은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u>
<u><신 설></u>	③ <u>정책기획관은 직제 제6조의2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 20호·제21호 및 제23호부터 제 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 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u><신 설></u>	④ <u>국제협력관은 직제 제6조의2 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 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③ ~ ⑬ (생 략)	⑤ ~ ⑮ (현행 제3항부터 제13 항까지와 같음)
제6조(고용정책실) ① <u>고용정책실</u>	제6조(고용정책실) ① <u>고용정책실</u>

장 · 노동시장정책관 ·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동시장정책관 ·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고용지원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⑮ (생 략)

장-----

-----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시장정책관 · 고용서비스정책관 ·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직제 제10호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직제 제10호제3항제9호부터 제17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고용지원정책정책관은 직제 제10호제3항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고용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 ⑮ (현행 제3항부터 제15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장 및 청년고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합고용정책국장 및 청년고용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③ ~ ⑪ (생략)

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항까지와 같음)

제6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장-----

-----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고용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년고용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청년고용정책관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합고용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⑫ (현행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

-----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노동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공공노사정
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④ (생 략)

⑤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②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
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
정책관·공공노사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노사협력정책관은 직제 제11
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정책실장
을 보좌한다.

④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제 제11
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
항에 대하여 노동정책실장을 보
좌한다.

⑤ 공공노사정책관은 직제 제11
조제3항제28호부터 제30호까지
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정책실장
을 보좌한다.

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⑧ -----
-----.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생 략)

⑥ ~ ⑫ (생 략)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4명(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 제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

18.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19. (현행 제18호와 같음)

⑨ ~ ⑮ (현행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
센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 7퍼센트-----

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16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으며, 별표 15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

③ -----

-----.

----- 7퍼
센트-----

-----.

④ -----

-----.

----- 7
퍼센트-----

-----.

⑤ -----

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
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7과 같다.

⑥ (생 략)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
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
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7퍼센트-----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
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고용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본문 및 제24조의3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6,434</u>	<u>삭제</u>	
일반직 계	<u>6,434</u>	<u>6,512</u>	+78
.	.	.	
.	.	.	
행정주사	<u>1,030</u>	<u>1,033</u>	+3
.	.	.	
.	.	.	
행정주사보	<u>1,174</u>	<u>1,177</u>	+3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u>389</u>	<u>394</u>	+5
.	.	.	
.	.	.	
행정서기	<u>404</u>	<u>406</u>	+2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	<u>601</u>	<u>620</u>	+19

서기			
·	·	·	
·	·	·	
행정서기보	<u>105</u>	<u>113</u>	+8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 담서기보	<u>841</u>	<u>864</u>	+23
직업상담서기보	<u>392</u>	<u>407</u>	+15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78.0</u>	<u>삭 제</u>	△78.0
일반직 계	<u>78.0</u>	<u>삭 제</u>	△78.0
행정주사	<u>3.0</u>	<u>삭 제</u>	△3.0
행정주사보	<u>3.0</u>	<u>삭 제</u>	△3.0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 담주사보	<u>5.0</u>	<u>삭 제</u>	△5.0
행정서기	<u>2.0</u>	<u>삭 제</u>	△2.0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 서기	<u>19.0</u>	<u>삭 제</u>	△19.0
행정서기보	<u>8.0</u>	<u>삭 제</u>	△8.0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 담서기보	<u>23.0</u>	<u>삭 제</u>	△23.0
직업상담서기보	<u>15.0</u>	<u>삭 제</u>	△15.0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의3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6,416</u>	<u>삭제</u>	
일반직 계	<u>6,416</u>	<u>6,494</u>	+78
·	·	·	
·	·	·	
행정주사	<u>870</u>	<u>873</u>	+3
·	·	·	
·	·	·	
행정주사보	<u>1,073</u>	<u>1,076</u>	+3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u>389</u>	<u>394</u>	+5
·	·	·	
·	·	·	
행정서기	<u>502</u>	<u>504</u>	+2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01</u>	<u>620</u>	+19

·	·	·	
·	·	·	
행정서기보	<u>197</u>	<u>205</u>	+8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 담서기보	<u>841</u>	<u>864</u>	+23
직업상담서기보	<u>396</u>	<u>411</u>	+15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78.0</u>	<u>삭 제</u>	△78.0
일반직 계	<u>78.0</u>	<u>삭 제</u>	△78.0
행정주사	<u>3.0</u>	<u>삭 제</u>	△3.0
행정주사보	<u>3.0</u>	<u>삭 제</u>	△3.0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 담주사보	<u>5.0</u>	<u>삭 제</u>	△5.0
행정서기	<u>2.0</u>	<u>삭 제</u>	△2.0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 서기	<u>19.0</u>	<u>삭 제</u>	△19.0
행정서기보	<u>8.0</u>	<u>삭 제</u>	△8.0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 담서기보	<u>23.0</u>	<u>삭 제</u>	△23.0
직업상담서기보	<u>15.0</u>	<u>삭 제</u>	△15.0

[별표 1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통합고용정책국 공정채용기반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산업안전감독	1명 (5급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유해화학물질 관리(지방고용노동관서)	9명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100명 (8급 30명, 9급 7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452명 (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3명 (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40명 (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6급 34명, 7급 58명, 8급 2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85명 (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9)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21명, 7급 32명, 8급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0)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6급 10명, 7급 16명, 8급 7명)	2022년 12월 31일까지